

자료집

공개토론회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2년 5월 23일(목) 13:00~17: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공개토론회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대통령소속의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자료집

공개토론회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2년 5월 23일(목) 13:00~17: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순서

순서

-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 1
- 위원장 인사말씀 / 2
- [발표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 4
- [발표문]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 11
- [발표문] 의문사진상규명과 관계기관 협조 / 29
- [참고자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반현황 / 41
- [참고자료] 의문사사건 접수내역 / 44
- [참고자료]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50
- 메모 / 6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12월 13일 (수) 13:00-15:00 : 서울
호텔 신라호텔 중대형회의실 : 소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I 부

- 13:00~13:20 개회
국민의례
위원장 인사말씀

II 부

- 13:20~14:00 발표 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발표 : 김삼웅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이은경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
- 14:00~14:50 발표 2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발표 :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토론 : 김철홍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 14:50~15:00 휴식
- 15:00~15:40 발표 3 : 의문사진상규명과 관계기관 협조
발표 : 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토론 : 김두원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
- 15:40~16:30 전체토론 : 발표자, 토론자,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폐회

인사 말씀

지난 날 암울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상처인 “의문사”라는 문제를 풀어 가는 우리 위원회의 과업이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전에 일어난 일의 진상을 밝히는 일 자체가 모래사장 속에서 한 개의 바늘을 찾듯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출범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려는 일은 우선 그간에 저희가 해 온 작업에 대한 보고이고 한편으론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협조의 요청, 특히 지도와 격려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약과 한계로선 우선 한시적 기구로서 시간과 싸워야 되고, 그 권한의 제약성으로 조사과정에서 벽에 부닥치고 있는 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진실과 성실만이 우리의 무기이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곧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신조로 일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YS정부 당시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쿠데타를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문사법에서도 1969년 이래의 민주화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전제로 그간의 정권의 不法 不當性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탄압체제하의 희생자인 피소추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무수한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아주 방치되다시피 해 온 입법상의 결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민주투쟁으로 범법자가 된 사람이 아직도 전과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재권력에 편승 또는 영합해서 그러한 탄압에 가담한 법조관료인 판·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출세도 하고 있고, 명사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면 사관 관료의 책임추궁과 숙청은 엄정하고 법원에는 나찌스 독재에 협력한 사법관의 사죄를 표명한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나 정부는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민주화에 따른 독재권력이 자행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의 개혁으로서 판결과 사법행정의 지침이 마련된 것을 보지

못한 채 구 독재 시대의 판결과 관행이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민주 운동가는 여전히 범법자이고 전과자이고 구시대 독재권력의 시녀인 법조관료는 여전히 “악법도 법”이란 구시대의 질서와 부패기득권의 파수꾼이 되어도 괜찮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해방 후, 건국 후에도 일제 법령의 일부 악법이 지속되고 일제 관료가 집권의 중추 세력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범법자, 전과자로 취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에 빠져드는 것은 저 한 사람의 심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시대의 모순을 타파해야 합니다. 독재의 상처도 아물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시적인 제약 하에서도 이 일을 반드시 풀어 나가야만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여건 하에서 의문사 진상을 완전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점의 정리와 그 후속의 과업을 위한 기반은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고인이 된 분들이나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한 시기에 정권의 희생물이 된 당사자 등 모두의 비극을 아몰리는 길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독재정권 하에서 또 그와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할 비극적 사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독재권력하의 實定法으로서의 범법 혐의자이고 범법자로 취급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法을 악용한 권력의 희생물이라고 할까요? 이 점을 깊이 인식 또 이해하지 못하고는 “의문사”의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점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못지 않게 관계기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보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의 보완, 개선 또는 신설을 기하고 한때에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받도록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국가적 과업이 아닙니까?

충심으로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호소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실로써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도움을 주십시오.

2002. 5. 2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 상 범

의문사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

김삼웅(성균관대학 겸임교수)

피와 땅과 눈물의 양분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했으니
 보아다오 이 나무를
 민족의 나무 해방의 나무 투쟁의 나무는
 이 나무를 키운 것은
 이 나무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낸 것은
 가신 임들이 흘리고 간 피가 아니었던가
 자기 시대와 걱정적으로 노래하고
 자기 시대와 걱정적으로 싸우고
 자기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김남주의 <전사 2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외세침략과 식민지, 분단과 6.25동족상잔, 거듭되는 백색 독재와 군사독재라는 폭압과 반이성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항상 이에 도전하고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기희생의 양심세력이 존재하였다.

일제와 친일파에 저항한 의병과 독립지사, 분단과 냉전세력에 도전한 통일 운동가,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인사 등 국가가 위난에 처할 때면 어김없이 의로운 양심세력이 나서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헌정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민족의 정통세력은 항상 소수파가 되고 합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진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에 들어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다.

이것은 군사독재 시대에 민주화를 추구하다가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함이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인권을 신장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역사적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데는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이나 '천막농성'을 벌이며 투쟁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회장 배은심)의 피 어린 노력과 민주인권국가 구현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 이상수 의원 등이 법을 발의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투옥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19명이다. 이중 노동운동 관련 92명, 학생운동 관련 60명, 빈민·노동자·군경·일반 시민이 64명으로 분류된다.

전국 '유가협'의 집계에 따르면 '의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는 총42건, 이중 절반 이상이 정치적 의문사로 분류되었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1년반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조사개시 83건중 조사가 종료된 사건은 15건(18%),상당히 진척된 사건은 59건(71%)이고 조사가 부진한 사건은 9건(11%)이라는 통계치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못한 활동기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역사정의의 큰 진전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시점을 1969년 8월 7일 박정희 독재정권의 3선 개헌을 기준으로 잡은 것을 비롯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시한, 100명도 안되는 인력 등 미흡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두 차례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여기에 위원회측과 유가족, 위원회 내부의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몇 달 동안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통령의 적극 협력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조사 협력 기관인 국정원, 경찰, 군 등 권력기관의 소극성과 비협조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과 은폐의 메카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조연현,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도 큰 문제이다. 다행히 새 위원장이 선임되고 내부문제와 유가족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상화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촌분을 아껴서 역사적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부 조사관 중에는 자신의 소속 기관과 관련된 사건조사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귀했을 때에 대비해서라는 이유

이다. 이에 따른 전보나 승진, 부처 변경 등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해방 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독립지사들을 홀대해온 것을 두고 애국심이 부족한 이승만 정권과 참회를 모르는 친일세력을 비판해 왔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만든 그 시대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상 군사독재 잔재 청산과 독재권력에 희생당한 의문사 진상규명 그리고 민주열사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소홀히 한다. 후세로부터 똑같이 비판받고 원망들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 리잘(Jose Ri Zal)을 기억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의 민족주의자로 기록되는 리잘은 의사이자 작가이고 시인이면서 필리핀 독립운동가로서 1861년 35세로 스페인 정부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그가 사망한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 추념한다.

필리핀 독립운동은 리잘의 처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리잘은 형장에서 “나는 조국의 밝은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밝은 세상의 사람들은 밤사이 스러져간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의 죄'

김남주 시인의 시구처럼 “이 나무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낸” 것은 민주제전에, 민족제단에 생명을 바친 열사와 의문사 희생자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집단 망각증세에 빠져있다. 군사독재 시대에 희생된 열사들의 죽음과 의문사로 사라진 민족·민주 영령들을 외면하고 망각해온 것이다.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분신·투신·자결·단식·옥사·고문사·의문사 등을 통해 희생된 민주열사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리고 압제와 불의에 대한 저항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하나뿐인, 일회성의 생명을 바쳐 싸우는 방법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희생은 다시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순결하고 고귀한 희생자들을 망각하고 외면해온 것이다. 마치 이런 문제는 유가협이나 추모연대,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맡기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인식해 왔다.

정부와 국회, 언론, 사법기관, 시민운동단체,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망각과 외면' 해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후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히틀러 나치를 용납한 독일국민의 4가지 죄를 들어 일대 참회운동을 벌이자고 제창했다. 야스퍼스는 4가지 죄 중에 나치치하에서 저항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형이상학의 죄'라고 단정했다.

또 독일 언론계에서는 '제2의 죄'를 논한다. 히틀러 지배 당시 독일인이 범한 죄가 제1의 죄라면, 제2의 죄는 1945년 이후 제1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의 경우를 비취 본다면 제2의 죄는 커녕 제1의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풍토가 사회를 지배해왔다.(조현연, 앞의책)

독재시대에 민주열사들처럼, 의문사희생자들처럼 저항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혹독한 시대에 '스러져 간' 영령들의 유지를 받들고 유가족을 예우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 도리이고 책무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형이상학의 죄값'을 치루는 길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처럼 망자(亡者)에 대한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도 흔치 않다. 산사람보다 더 정성으로 묘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혼령을 위로해 왔다. 특히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셋김굿을 하고 한풀이를 해줌으로써 구천을 헤매이던 중음신(中陰神)이 해원상생의 귀천(歸天)을 하게 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에 희생된 영령들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민주열사와 의문사희생자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제역할을 다했는가. 강도를 잡다가 칼에 찔려 죽은 시민에게는 의인 칭호를 주고 국민표창을 추서하면서 건국이념이고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운동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예우했는가? 역사와 영령들에게 그리고 유구하게 전개될 자손만대에 웃기를 여미며 질문하고 해답을 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19혁명 희생자들을 모시는 4·19국립묘소가 서울 수유리에 조성되고, 5·18 민주화 희생자들을 모시는 5월 민주공원이 광주에 건립되었다. 그런데 4·19와 5·18희생자를 제외한 민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시고 추모하는 민주공원 조성은 정부와 서울시 당국의 무책임과 비협조로 아직 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는 아낌없이 많은 부지를 내놓은 서울시가 민주공원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민주공원을 조성하고 민주화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나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평화박물관'처럼 우리도 민주기념관을 지어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의문사 규명은 역사의 定言命令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적 소명 의식과 국가이성의 실천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역사적 소명'이란 항일애국지사를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이래 백범 김구선생 암살진상규명 등 한국현대사의 국가폭력주의와 반이성적 행위가 거의 규명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까지 포함한다. 왜곡된 역사가 독재를 낳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더 이상의 국가폭력과 반이성적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족, 민주인사들의 의문사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통일운동가를 학살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바로 국민의 천부적 저항권사상의 발동이다. 항일투쟁이나 반독재투쟁은 바로 '국가이성(민족이성)'의 구현을 위한 저항권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소명'과 '국가이성'에 충실하고자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자들의 삶과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유족을 보살피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국가이성 발현'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정기를 살리는 길이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어떤 방법의 역사교육과 정신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국민교육의 방법이 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生)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정언적 명령(定言的命令)'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정언명령이고 철학상의 형이상학의 과제인 것이다. 이 시대에 의문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후세에 두고두고 원망과 지탄을 받게 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암살은 두꺼운 베일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간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권력 특히 정보기관이나 군·경찰이 개입한 암살과 의문사는 더욱 그러하다. 반세기 이상 같은 뿌리의 독재정권이 지속돼온 한국사회에서 정치목적으로 자행된 각종 의문사를 밝히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앞에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

드레퓔스사건도 '완전범죄'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왕당파와 이를 부추기는 국수주의적 언론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공화파 지식인들을 "프랑스와 프랑스의 이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공격했다.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소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에밀 졸라와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 클레망소와 같은 언론인, 장 조레스와 같은 정치인, 마르셀 푸르스트와 같은 소설가, 클로드 모네와 같은 화가, 에일 뒤르켑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으로 드레퓔스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영어에서 증인(證人)을 Martyr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의 순교자에서 어원한다. 증인이 순교자의 뜻을 갖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다. 진실을 증언하려면 순교와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함의인 것이다.

따라서 독재정권시대 의문사에 직접 개입했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 비록 고통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밝혀 역사의 정의를 보여주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구하는 길이다.

남아공(共)에서는 백인정권 시절 공권력과 백인특권층이 저지른 비인간적 인종차별 범죄에대한 참회하는 사람이 많았다. 백인정권하에서 17년간 외무장관을 지낸 윌프 피크 보타와 당시 법질서 장관이었던 아드리안 블록 등 고위인사들이 "흑인과 혼혈 유색인종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고 시인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

드레퓔스사건의 세계사적 의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한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졌던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치의 기틀을 이룩한 것이다.

의문사 진상조사의 역사적 소임을 맡은 조사관들과 관계자들은 "나는 궁극적 승리를 확신한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진실이 땅에 묻히더라도 그것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무서운 폭발력을 온축한다. 이것이 폭발하면 세상의 모든 악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다짐한 에밀 졸라의 정신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실' 밝히는 것이 최대가치

이 기회에 유가협과 추모연대에도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한다. 혈육을 국가폭력에 빼앗기고 사회적인 냉대와 망각속에서 회한의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아픔과 슬픔은 어떤 위로나 보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 이상의 가치는 다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사건에 따라 설혹 조사결과가 국가폭력이 아닌 자살이거나 단순 사고사

라 하더라도 이를 진실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혈육의 곁을 떠난 혼령을 바르게 예우하고 편히 쉬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떠한 죽음을 막론하고 억울한 죽임이나 부당한 누명은 씻기 어려운 최악의 으뜸이 된다. 반대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는 반드시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친일파청산이 이승만정권의 폭력사태로 와해된 이래 백범선생을 비롯한 각종 암살사건이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반이성의 시대를 살아왔다. 군사독재에 억울하게 스러져간 의문사의 죽음이 단 한건이라도 호지부지된다면 우리가 사는 당대가 문명시대가 아닌 야만시대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만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된 것은 민주열사와 의문사로 스러져간 분들의 희생의 댓가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사이 스러져간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칼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의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문사를 한 점 남김이 없이 밝혀낸다면 그것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영광이고 승리일 것이다. 다만 2.28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아르헨티나 국가실종자위원회,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 칠레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못지 않는 역할과 활동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강경선(방송대 교수, 법학)

1. 법제정 경위와 시행과정

현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1998년 4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해 11월 4일부터는 유가협 중심으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렬한 시위와 주장이 반영되면서 국회에서는 1999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 또는 '[보상법]'으로 약칭함)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협은 422일간의 천막농성을 해단하고 그후 2000년 3월 30일 유가협,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법시행을 올바르게 견인하고 견제하는 민간의 운동기구로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들 법들은 우리 헌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장했다는 역사적, 법적 의의를 갖고 있다.

2000년 7월 10일 시행령 공포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자는 국무총리산하로, 후자는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였다. 법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지금쯤 벌써 업무를 종결지었거나 마무리짓는 정도에 와있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사정은 현재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존속을 일시 연장하는 상태로 들어갔으며, 민주화보상위심의위원회도 전체 업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처리의 지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자체가 별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큰 당면문제

1) 「의문사법」 제18조 2항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21조 1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3조는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21조 2항은 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민주화보상법」 제10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제11조는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행불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²⁾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가진 민주화능력의 한계라는 외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정부는 국민들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화의지와 열망을 반영하여 이들 개혁입법들을 불충분하게나마 제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다. 만약 우리 사회가 바람직스럽게 민주화의 길을 확대시켜나갔다면, 그 후 이들 법이 비록 제정당시에는 흠결은 많았더라도 그 후 진행과정중에 그 흠결들을 치유해가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수준에 미달하였다. 잠복하고 있던 수구보수세력들이 민주화세력에 목청을 높이면서 일이 지체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질수록 이들 개혁입법들의 성공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진 것은 현정부의 집권말기에 이르면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행태의 시정보다는 민주화세력의 문제점부각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도덕성부재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반발을 무마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이르지 못한 민주화세력에도 일단의 책임은 존재한다. 즉, 외재적 요인이 난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불리한 외재적 요인을 극복해가면서 민주화 역량을 점차 확대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활동도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한 측면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해석에서도 발견된다.

2.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해석

(1) 관계법조문

「의문사법」과 [민주화보상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이다. 「의문사법」 제2조 제1호는 “‘의문사’라 함은 민주

2) 이들 위원회의 업무성과에 대한 불신 내지 불만은 의문사위원회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시위농성과 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졌고,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경우 제1차접수기간(2000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 있었던 8천여건에 비해 제2차접수기간(2001년 12월 31일)의 접수가 2천여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은 2차접수기간 중에는 1차 접수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신청되리라고 보았었다. 따라서 아주 일이 성과있게 진행되었더라면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위원회활동기한도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상법]은 제정과정에서 관계 의원들의 공은 들었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상당부분 졸속 제정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제1조와 제2조를 소개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2)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이 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모호한 해석을 남겼다. 그 대표적 예가 이 법을 적용할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관한 부분이다.³⁾ 그러나 역시 중요한 부분

3) [보상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1969년 8월 7일 이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9년 8월 7일은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국회에 3선개헌안을 발의한 날짜이다. 즉 이 법은 이미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대통령임기연장에 관한 개헌안이 명확히 제기된

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의 뜻

1) [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다양성은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로부터 민주화운동의 내용이 어디까지인가가 계속 문제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민주화, 민주화운동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과학 학계에서도 '민주화'의 개념은 논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상법」은 나름대로의 개념규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통해서 민주화,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이 분명해진 것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군부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부한

이 날을 박정희정권이 권위주의정권으로 넘어간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날 이후 전개된 국민들의 저항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날 이전에 발생한 3선개헌에 대한 항거 관련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종기를 따로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통치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① 현행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시점까지(1987년 10월 29일)
- ② 문민정부수립 이전까지(1993년 2월)
- ③ 국민정부수립 이전까지(1998년 2월)
- ④ [외문사법],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때까지(2000년 1월 12일)
- ⑤ 위 법들이 신청기한으로 잡는 때까지

①을 주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헌법과 자유로운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군부정권의 계승자인 노태우정권이 끝난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적다. 권위주의 정권은 6월항쟁을 통해서 한풀 꺾이고,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약화되고 있을지언정 그 잔재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이 정권과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적용의 종기는 현재까지라는 ⑤ 의견이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와 현정부에서의 시국사건에 대한 법적용은 여러 가지로 과거군사정권시절에서의 사건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자유주의 운동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분단과 외세와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 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반미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운동의 해석과 관련한 난제(hard case)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보상법」에 따른 제1차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명예회복(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신청이 약 7500건, 보상금 신청이 약900건으로 명예회복 신청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4) 유신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망라되고 있다. 3선개헌반대, 긴급조치위반, 독재정권반대시위, 6.10민주화투쟁,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미문화원점거 등, 집시법위반, 언론해직자, 각종 기업의 노동운동, 청계피복 노조사건, 부마항쟁, 신민당사 폭력사건, 삼민투사건, 분신자살, 인천 4.3사태, 전교조관련, 카농 춘천교구사건, 평양방문사건 등 무수한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그 중 다수 관련자 사건으로는 전교조관련사건(1,500여건), 긴급조치위반(600여건), 독재정권반대시위(450여건), 유신반대(약 200건) 등이다.

대체로 볼 때 유신시대의 3선개헌반대시위나 긴급조치위반사건, 그리고 군부독재시절의 반대시위 등은 [보상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노동사건으로 넘어가면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나, 단순히 사기업의 사용자와의 싸움에서 일어나 피해자나라는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보다 심하였다.5) 헌법상 제3자 개입효가 이와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생겼다. 전교조의 경우에는 일반노조와 달리 훨씬 조직적이고 방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지원단과 위원회에 민주화운동해당성을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전교조case는 동의대사건과 함께 「보상심의위원회」가 파란을 겪는 높은 산이 되고 말았다.6)7)

- 4) 광주 5.18보상의 경우 사망자, 상이자 신청이 전체 87%를 차지한 것과 차이가 있다.
- 5) 그래서 보상지원단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노동분야의 민주화운동 세부기준' 마련 작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6) 89년 이후의 전교조활동은 교사의 노조활동의 적절성여부에 대한 일부국민들의 비판과 상관없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교육민주화운동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교육분야의 권위주의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활동으로 맞서고 희생당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참교육의 기치를 내세운 점에서도 민주화운동이지만, 당시 법률에 반하는 노조구성을 통한 활동도 헌법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헌법운동 즉 민주화운동이었음에 분명하다. 또한 동의대 사건은 법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압과정중에 경찰들이 사망하였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문제를 혼란에 빠트렸다. 학생들의 시위는 저항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찰의 사망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발생한 불행이었다. 별도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 7)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교조운동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국가보안법관련 사안은 더욱 많은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사건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현존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준의 향방에 대한 복잡성이 자리잡고 있다.

2)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당장 어느 정도까지가 '항거'인가와 항거의 결과 민주헌정질서확립에 대한 기여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적극적 기여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이런 의문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제2조 제1호의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단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 통치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과 관련된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각분야의 민주화운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은 제외한다고 하는 해석은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 실제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와 싸운 학생들의 학내운동은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과연 이런 해석이 정당할까?

돌이켜보면 대도시의 자리가 잡힌 명문 국공립, 사립대학들은 학내문제보다도 흔히 대외문제를 향하여 정치적 시위를 많이 하였다. 국가권력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명분도 좋고 설사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분 있는 민주운동인사로 분류되어 조기석방과 사면, 그리고 정치적 대우를

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림으로써 「보상심의위원회」 3인이 사퇴한 것은 바로 「보상법」과 「보상심의위원회」를 제정하고 구성한 현정부의 민주화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위원 세분은 이미 상당한 부분 유신시대와 80년대의 독재정권에 대한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인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왔으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결국 민주화의 개념을 자유화에 국한시키느냐, 혹은 자유화는 물론 사회화까지 포함시키느냐는 태도와도 관련된다. 어쨌든 보상심의위원들이 위원사직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시키기 보다는 「보상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사안에 관한 한 마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내어 위원 자신들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국민들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입증받는 보다 권위있고, 합리적인 기구로 운영되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소규모의 사립 대학일수록 재단의 비리는 더욱 많았고, 학생들은 대외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 조차 없이 학내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단과의 난장판과 같은 싸움은 물론, 실력을 물론하고 학생들에 무관심한 교수들을 축출하는 등 사회여론으로부터도 외면 당하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는 국가권력이 개재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말 개인적인 봉급인상, 개인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벌어진 투쟁의 경우는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권력은 오늘날 비단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학교, 교회, 회사, 가정 등) 침투되어 있다는 푸코(Foucault)의 사회이론을 생각해본다면 외부인의 눈으로는 명분 없는 싸움 가운데서도 지난한 부패권력과 싸움을 벌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4) '민주화운동관련자'

1) 민주화운동에의 적극적 의지의 유무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제2조 제1호에서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게 될 대상자는 제1조 목적 조항과 제2조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된다. 위 해당 조문에서 보듯이 제1조 목적은 이미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로 시작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엄격해석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뜻은 '민주화운동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고'라는 해석으로 임하였다. 물론 그후에는 이를 완화시켜 '자발적인'은 삭제하고 '참여의사를 가지고'라는 의미로 새기기로 하였다. 아무튼 민주화운동에 대한 참여의사의 유무가 관련자로서의 포함여부의 기준이 되기에 이르렀다. 위원

회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비해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그 대상선정에서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광주보상법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데 비해서, 민주화보상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⁸⁾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 처리의 명확성은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민주화의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법의 보장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의문사법」과의 갈등도 예상된다.⁹⁾

2) 소극적 도덕성과 적극적 도덕성의 문제

「보상심의위원회」가 견지하는 민주화운동에의 적극적 의지의 존재를 중시하자는 것이 마냥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저변에는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축소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볼 때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것은 종래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반대하거나 냉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 시행하는 바에는 아깝게 다치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다 보상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민주화의 투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결국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 혹은 실추시킬까봐 이런 엄격해석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더 크게 보면 소극적 도덕성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동시에 이들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이 민주화의 완성시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민주화의 도정에서 그래도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부아래에서 출현했다는 점을 안다면 민주화보상의 시행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은

8) 물론 군대가 직접 민간인에게 학살을 가한 광주사태는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하여 더욱 비극적이고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주화운동의 경우 국가권력의 불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 법에서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한 결정들을 뒤엎는 조치들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이 과거의 불법행위자들을 드러내서 처벌, 구상권행사 등을 하는 과거청산의 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이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한 박영두씨의 의문사는 적극적 민주화의지를 중시하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미지수다. 또한 최종길교수의 의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까지 확장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들의 궁극적 목적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보상법」과 「의문사법」 제1조는 각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법의 목적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진정 부합하고자 한다면 민주화운동의 존재와 그와 근접한 거리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당한 피해를 찾아서 회복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법의 해석의 방향을 민주화의 유공자를 밝히는 ‘민주화유공자법’으로 보다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두되 그와 관련된 피해자를 널리 구제하는 ‘민주화피해자보상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태도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도덕성을 발휘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¹⁰⁾ 이와 함께 신청자의 의지의 유무도 검토해야겠지만 오히려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서의 고의, 과실, 무과실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이 법의 목적은 불법적 국가권력을 씻고, 정당성을 회복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의 문제

하나의 사건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법과 관련된 인과관계(causality)와 증거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행적이 [보상법]이 정하는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적이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사실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시위중이나 연행, 구속 중에 경찰 등에 의해서 심한 고문, 구타 등

10)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남게 되었다. 즉 민주화와 전혀 관련없이 불법시대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삼청교육대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고, 또 긴 군사정권의 시절에 취중발언으로 인하여 긴급조치나 국보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시위대 주변에 있다가 사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라면 이들은 국가배상법의 대상자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많아서 당시의 권위주의 정권을 대상으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남아있다. 우리 국가가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을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다쳐서 당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나 입원을 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진술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당시에 상이를 당해서 병원에 갔으나 그 병원이 현재는 없어졌다거나, 병원의 진단서 보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병원에 가서 다른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은 경우(당시에 시위하다가 부상당했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의 단서가 될까봐 다른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든가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부상, 상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보상법이란 점을 감안해서 이때를 대비해서 인우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인우보증제도 그렇게 유용하지를 못하다. 인우보증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누가 와서 부탁했을 때 마지 못해 보증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¹⁾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현재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심한 고문이 그후 뇌졸중, 간암, 위암을 유발시켜 결국 조기 사망하게 되었다는 호소를 해왔을 때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참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신질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일시적인 경찰서로의 연행과 위협, 구타, 불법구금 가운데 얻은 정신적 충격이 서서히 일생동안 정신질환으로 확대되었다고 호소해 온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는 더욱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관련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이첩하여 민주화운동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참고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참고의견이지만 대개의 경우 전문분과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²⁾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판단은 엄격한 인과관계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올 때 법률적 판단은 상당부분 의학적 지식에 의존

11) 광주민중화보상법의 시행과정에서는 인과관계와 입증보다도 인우보증에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란 인우보증 이외의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우보증을 사용한 결과 허위 피해자도 많이 섞여들게 되어 부작용도 많았다는 반성도 나왔다.

12) 예컨대, 민주화운동중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이나 구금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는 신청에 대해 정신분열이란 본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환경이 정신분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에 있던 분열증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문이나 구금이 이 분열증의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신분열증의 체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발병하지 않고 잘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런 경우 체질이나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발병하게 만든 국가는 이 사람의 발병에 대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과관계론은 정말 무모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론과 법학적 인과관계론은 다른 것이다. 상호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후자는 전자의 결론을 존중할 뿐이지 구속당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보상법」, 「의문사법」은 일정한 헌법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당한 사상들을 인과관계론이라는 합리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조차 이미 불합리하고, 무모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¹³⁾

상당한 인과관계, 확실한 입증은 명확한 법률적 적용에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과거의 실제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운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이 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아래 제5절에서 주장하듯이 「보상법」, 「의문사법」이 준(準)헌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일반적 법률논리보다는 준헌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한 인과관계론, 입증책임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¹⁴⁾

4. 입법개정운동

이상과 같은 입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보상심의위원회측이나 민간단체들은 한결같이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보상의 지급기준이 동일한 희생에 대해서 지급액의 격차가 심하여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고, 심의조직의 핵심기구인 보상심의위원회가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다수 신청건 처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

13) 독일에서도 이미 오래전의 나치스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인과관계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이 그 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를 합의한 바에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 한 시대를 마무리짓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14) 예컨대, 거의 10년 이상을 반독재투쟁의 대열에서 지내던 직업운동가가 도피중에 개인적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하자. 또 엠티를 떠났다가 다른 일로 사망한 일, 혹은 위장취업했다가 작업중 사망 혹은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전혀 없는 것이 온당할까? 공무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위로금이나 때로는 순직처리를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현재 입증되지 않는 상해나 사망을 했다고 할 때 후자는 의문사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전자는 의문상(疑問傷)으로 남을 것이다. 이때 전후과정에서 이 사람이 운동이 뚜렷했던 사람이라면 비록 현재 입증은 할 수 없다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 상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전환논리를 구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소극적인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받는 사망, 상이자와는 달리 유죄판결, 해직자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실익이 없게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를 '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및 '수배자'까지 확대하되, 민주화운동경력이 인정되더라도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반한 활동을 한 자는 제외한다.
- 2) 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이전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상임제를 도입하며 사무행정기구를 사무국체제로 개편하여 심의기능에 적합한 실질적 위원회체제로의 전환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위원장의 예우와 보수는 국무위원급의 예에 의하고,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차관급에 준한다.
- 3)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서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복학 및 복직의 권고 등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불이익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각급 학교에 관련자의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한다.
- 4) 보상금은 관련자의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단일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확보와 합리화를 도모한다.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억원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에 대하여는 9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한 금액
 -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 보상결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액에 실제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금액을 7천만원으로 한다.
 - 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 보상결정년

도의 건설부문 보통인부임에 실제해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 5)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상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 명예회복 및 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 6) 업무처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현행 '90일'(행불자의 경우 120일)에서 '180일'(행불자의 경우 240일)로 연장하여 심의현실에 적합하도록 심의기한을 정한다.
- 7) 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의무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에서는 비판적으로 다른안을 마련하고 있다.¹⁵⁾¹⁶⁾

15) 2001년 7월말까지의 계승연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민주화운동의 활동시기를 5.16이후로 하여 6.3세대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시에 통일운동을 확실히 이 법의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 2) 개정안에서는 민주화운동에 해당되는 자라도 해당활동 이후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반한 활동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자칫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3) 민주화운동관련 사망자의 심의에서 기왕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4)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위원은 단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또 위원회의 위원추천권자에서 추모(민주)단체의 추천권이 배제된 것은 잘못이다.
- 5)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사무국의 신설, 단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주화운동경력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명예회복의 내용인 특별사면, 복권, 복직, 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등이 권고사항이 아닌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 7) 보상금 산정은 사망자의 경우 1일 도시일용노임*생존가능일수로, 해직자의 경우 1일 도시일용노임*해직일수-해직기간수입액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돈 액수를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로금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 정부의 오류와 책임으로 보상됨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항목이다.
- 16) 또한 최근 전교조와 동의대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인정에 대한 반대여론에 따라 민주당에서조차 재심절차를 인정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런 발언은 「보상법」과 「의문사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보상심의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이 헌법상, 법률상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법의 취지로 보면 「보상심의회」는 적어도 민주

5. 「보상법」과 「의문사법」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준(準)헌법적 성격의 「보상법」과 「의문사법」

이 법들은 유가족 등 지난 군부정권시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부모,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언제 어느 때나 이 사회가 반드시 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명분을 크게 하면서 비단 유가족에 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하에서 이 법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이어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들은 과거청산의 성격을 띠는 법률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정상적이라면 헌법의 변동시기에 헌법의 '부칙'에서 정하여 이런 법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 또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강하고 확실하게 시행했어야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법률들은 우리 헌법에는 사실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항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화시킨 의미를 갖는 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난 문민정부이래 다음의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과거청산은 불문에 붙이고, 단지 과거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만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헌법의 변동이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헌법의 변동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런 성격의 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들은 비록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헌법에 준하는 법률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과거청산은 불가능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이 밝혀짐으로써 과거 권력자(정치가, 법관 및 검찰, 경찰, 기업의 사장, 교육기관책임자)의 전체적인 반성이 따라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보상법]은 헌법에 준하는 법률로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에 따라 해석되기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이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서는 완결된 최종심판단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법원소송 등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 자체에도 재심절차가 있듯이 「보상심의위원회」도 결정적인 착오가 생긴 경우 자신의 판단을 재심하는 절차는 민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준하여 마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적 해석을 가함으로써 [보상법] 제1조의 목적에도 명확히 표현되었듯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은 '헌법운동'이다

[보상법]과 [의문사법]의 핵심어는 '민주화운동'이다. [보상법]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수호에 기여한 활동이다." 민주헌정질서수호는 곧 헌법학상의 '헌법수호'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헌법수호를 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민주화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는 헌법은 말로만 있었을 뿐이지(명목적 헌법), 규범적 의미는 없었던 나라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헌법의 규범성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헌법을 높은 수준의 헌법으로 변모시킨 모든 노력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이 [보상법], [의문사법]은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의 내용들을 메워 가는 법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길게 보면 지난 50여 년의 헌정사(더욱 길게는 일제시대까지 확장되어야겠다), 짧게 보면 1969년 이래의 왜곡된 헌정사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 기간 중에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한 형편을 바로 잡아 향후의 민주화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민주화운동 노력을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법은 민주화가 많이 나아진 현 상황에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서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 즉 [민주화보상법]의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옥에 갇혔거나, 해고당했거나, 학사징계를 당한 사람들에게 명예회복 혹은 보상을 해주려 함이요, [의문사법]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민주화보상법]의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사인이 불명확함으로써 [민주화보상]을 청구할 수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상법]이나 [의문사법]에는 목적 조항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헌법이 보다 발전된 나라가 되려면 이상과 같이 과거 오랫동안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잔재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과거청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역사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

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과거의 업보로부터 오는 구속,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상법], [의문사법]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다.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서 이 두 법은 자신의 법취지를 충분히 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이 법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고 싶다.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최고법규범적 가치를 정부나 국민들이 모두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이 법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부처나 공무원들은 이 법의 다른 일반 법률에 대한 우위성을 심분 인식해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직속의 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이후의 위원회활동과정도 모두 그런 헌법적 의의를 부여받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3) 법해석의 기준

여기에서 첫째 제기하고 싶은 주제는 '법해석의 기준'이다. [보상법], [의문사법]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법이라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들에 대한 해석도 일반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구나 이 법이 제정된 계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특히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의 출범--어느 정도 국민적 여망을 기반으로 성립한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별히 이것을 '국민주권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해석용어가 물론 헌법학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국가권력에 의한 비민주적, 반민주적 해석에 익숙해져온 것이 사실이다. 공식적인 정부집행기구에 의한 법해석과 적용, 각종 정보기관에 의한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석들이 올바른 해석과 비민주적, 반민주적 해석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 과거의 헌정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법집행과 재판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전례로 존중하는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우리가 라트브루흐의 '법률적 불법'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이 시기

에는 법률과 많은 하위법령들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도 '불법적' 해석과 적용이 많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법] 같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의 습관,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해석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나라와 같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종합적으로 말해서 그리 민주적이지 않은--그런 법해석방법론은 시정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¹⁷⁾

이런 점에서 필자는 '법률가들의 해석관점' 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해석의 관점'--국민주권적 해석--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싶다. 물론 '일반국민들의 해석의 관점'이란 매우 추상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 법률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 법률에 기대하는 그런 상식에 입각한 해석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 법에 바라는 해석, 그것은 곧 헌법의 올바른 해석방법, 해석기준을 찾자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6.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친일인사, 독재정권시대의 집권자 및 어용인사,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유착을 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킨 기업이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사회적으로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맞고 있다. 수구세력의 존속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민주화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의 성공사례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더구나 통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 그때도 과거청산의 이름아래 피흘림 하나 없이 민주화로의 통일된 나라건설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과거에 대한 회개와 반성 없이 어찌 바른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논리를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과거의 원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시켜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전 사회가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17)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해석은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헌재 1989.9.8, 88헌가6. 참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통한 점진적 과거청산의 방법이란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민주화권력과 권위주의 권력이 공존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런 어려운 길 가운데서 우리는 민주화 권력이 계속 확대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입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1. 12)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통합특별법]제정과, 60년대의 6.3사태 관련 민주화운동보상법제정, 더욱 길게는 일제 친일인사에 관한 청산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도 설치되었다. 이런 작업이 종합적으로 성과만 낸다면 21세기를 향한 전진 속에서 20세기에 벌여졌던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疑問死真相糾明과 관계기관 협조

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1. 서언 : 당위성 및 필요성
2. 관계기관의 조사협조에 대한 법적 근거
3. 조사협조 상황과 위원회의 입장
4. 보안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5. 결론

1. 서언 : 당위성 및 필요성

위원회 설립목적은 권위주의 통치로 비롯된 의문사사건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특성상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이 조사협조 및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특정 기관을 가해자로 전제하고 조사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소임은 권위주의 통치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의문의 사망 사건에 관계한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일 뿐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지나간 어두운 역사의 진상을 밝혀내어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관련자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 기관 입장에서는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특정한 기관(또는 그 전신)이 의문사 사건에 관련되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부조리로부터 단절되고, 기관 및 그 구성원이 받고 있는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원회로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관계기관이 국민의 신뢰라는 진정한 의미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관계기관의 조사협조 대한 법적 근거

위원회는 물론 조사활동 과정에서 기관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아래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협조 현황은 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조사활동과 각 기관의 조사협조의 법적 근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1) 일반적 규정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조 항	규 정 내 용
특별법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법 제4조 제3항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2) 세부내용

규 정 내 용	조 항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특별법 제22조 제3항
실지조사시 대상 시설 기관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	특별법 제22조 제5항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준용	특별법 제22조 제6항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특별법 제37조 제2호, 제3호

3. 조사 협조현황과 위원회의 입장

1) 협조되어야 할 사항 및 협조진행 개관

- ① **현직자에 대한 조사** : 사건 또는 사망자와 관계된 지정 가능한 현직자에 대한 조사 협조
 - ⇒ 현직자에 대한 조사는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위원회의 조사권이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피조사자가 사건 무관성, 민주화운동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
- ② **전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 사건에 지목 가능한 인물 중 보직이동 및 퇴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지목불능인 경우 당시 연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한 정보 제공
 - ⇒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된 경우 사건 당시 해당 직책에 있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대체로 기관은 전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편이다.
- ③ **사건관련 기록제공** :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작성된 공식기록 제공
 - ⇒ 사건 관련 기록은 진상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기관에서 의사표현한 비협조 사유는 '보안상의 문제', '개인정보유출문제' '사건의 무관성' 그리고 '해당 자료 없음' 등이다.
 - 특정자료를 지적할 수 없는 경우 대개 위원회로서는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요청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포괄적 자료요구'에 대하여 기관은 대체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가급적 포괄적 자료요청을 피하고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문서분류 규정」이나 「보존문서대장」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있다.
 - 반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일부 기관은 문서보존장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례도 있었다.
 - 관계기관의 기록제공은 사건조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기관은 동일한 성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대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자료 협조에 있어서는 기관차원의 의지여부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④ 실지조사 :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대한 조사 지원

⇒ 우선 군부대처럼 사건현장으로서 통제구역인 경우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외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지조사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기록보존장소에 대한 조사 등이 그 예이다.

2) 비협조 사유 및 위원회의 견해

① '군사상비밀' 및 '공무상 비밀'의 이유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군내 사망사건을 비롯 조사사건의 상당수는 군 또는 정보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협조에 대한 해당 기관의 회신은 상당수가 '군사상비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료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인지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관련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규칙에 의거) 먼저 이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이 불필요한 불신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대장 자체를 제출 또는 열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특별법 제37조)

둘째,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각 사건 별로 국가안보의 측면과 의문사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양자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군과 정보기관, 기타 공안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국가가 아무리 많은 훈련된 병사와 좋은 무기를 갖고, 잘 조직된 치안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때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더욱 허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손상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국가기밀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민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면 이 또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보적 중요성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것이 소멸되었거나 빈약한 자료.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밀성이 없는 자료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안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료내용의 안보상 중요도와 진상규명에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대상자료가 단순히 외부에만 공개할 수 없는 대외비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정치적 이해나 행정편의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기관이 이의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희박하다.

②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경우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의해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가기관으로서 관련기관에 요구하는 자료 협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문제로 삼아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조사권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이다. 사생활 보호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사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③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건이 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인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또는 본 기관과 관련 없으므로 자료협조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고, 국가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이 있으며,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중 민주화운동관련성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의문사사건으로의 인용, 기각, 그리고 조사불능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즉,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이 이를 먼저 판단하고, 위원회가 그 판단에 따라 조사한다면 위원회는 존립할 근거를 잃게 된다. 즉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성 판단은 피조사기관 또는 조사협조기관이 협조여부와 관계하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 기관 관련성 여부 역시 피조사기관에서 조사협조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제시되기에는 부적절한 근거이다. 오히려 기관은 무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기타

일부 사안에서 “관련자료 폐기”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문서 무단 파기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므로 논의이나, 이 문제는 합법적 폐기여부에 상관없이 위원회와 기관간의 신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서폐기 근거와 증거서류가 있다면 폐기사실 및 그 합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존 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서보관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거부할 경우 특별법 제37조 제3호 저촉)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든 없는 경우 그것이 고의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3) 종합검토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기관(국정원, 경찰청, 검찰, 기무사령부 등)에 자료제출요구의 권한이 있고, 요구에 응하는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관련자료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특별법 22조 6항,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제출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조사협조의 일률성 유지

이상의 조사 비협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건의 경우 자료제공이나 실지조사 등 원활한 조사협조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위원회로서는 상기 비협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경우 사이에 협조내용의 성격상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 비협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한 성격의 사인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같은 수준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보안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1) 보안유지 위한 규정 준수

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보안업무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모든 직무를 통할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원장은 보안업무규정의 비밀업무취급인가자가 될 수 있다.

① 비밀취급인가 및 보안업무지침 마련

위원회 직원은 비밀누설 금지의무(특별법 제15조)와 함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특별법 제38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위원 모두에 대해 위원장 명의의 비밀취급인가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보안업무 시행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자에게 대한 신원조사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 14명에 대해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바 있다.(2002.1.22) 그리고 자체보안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수시 및 정기(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속직원의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② 보안담당관 지정

위원회의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문서, 시설, 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였으며(위원회 사무국장), 이 같은 결과를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한 바 있다.

2) 보안에 관한 일부 기관의 우려에 대한 입장

일부 관계기관에서는 비밀은 소관업무 범위내의 비밀만 취급가능하며, 위원장이 발급한 소속직원의 비밀취급인가로는 다른 기관의 비밀을 취급·열람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제시되었으며, 더불어 본 위원회가 한시조직으로서 구성원 역시 민간에서 충원되어 조직된 기관으로서 기밀사항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 역시 표현한 바 있다.

위원회 조사활동은 특성상 군, 경찰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조사활동의 주요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사업무 활동 중 취득한 이 같은 자료를 일반 서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한 위원회보안규정에 따라 취급인가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한시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충원된 직원이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위원 신분문제 논란에 앞서 위원회는 엄연한 국가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 전문위원은 상근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에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활동 중 작성되거나 입수된 보안대상정보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면, 그것은 사안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이견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위원회는 보안문제 거론이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믿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각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위원회와 함께 전향적으로 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5. 결언

우리 위원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의문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업무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

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가의 위신은 비밀을 지키려고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드레퓌스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부는 드레퓌스의 간첩혐의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재판 뒤 프랑스는 반인권, 인종차별, 군국주의라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걸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을 겪었다. 이러한 국가적 수치와 혼란은 결국 사건조작의 진상이 밝혀지고 드레퓌스의 누명이 벗겨짐으로써 해소되었다. 또한 분열되었던 국론 역시 '자유프랑스'라는 기치로 다시 모였고, 드레퓌스가 석방되는 날 사람들은 '진실 만세!', '정의 만세!'와 함께 '프랑스군 만세!'를 외쳤다. 국가의 안보가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와 결코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법률로 규정된 한정된 조사기한을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전사회적으로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결된다면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계 기관의 명예회복도 더욱 지체될 것이고,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위원회와 관련기관 모두가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조사기한 동안 위원회의 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불행했던 역사의 부채를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반현황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령 제정 경위

- '80년대초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에서 입법촉구 활동 및 청원
- 1999. 8. 2 이상수의원(민주)외 155명 발의
- 1999.12.28 국회 본회의 의결
- 2000. 1.15 대통령 서명·공포 (법률 제6,170호)
- 2000. 7.10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6,898호)
- 2000.10.1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2001. 6.19 이종걸의원(민주)외 105명 「의문사법」 1차 개정안 발의
- 2001. 6.28 국회 본회의 의결(수정안 가결)
- 2001. 7.24 1차 개정법안 공포·시행(법률 제6,496호)
- 2002. 2. 8 이창복의원(민주)외 77명 「의문사법」 2차개정안 발의
- 2002. 2.28 국회 본회의 의결
- 2002. 3.25 2차 개정법안 공포·시행(법률 제6,670호)

2. 법령의 주요골자

□ 목 적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 진정서 제출기한

- 2000. 12. 31까지 (69.8.7이후 발생한 사건)

□ 2차 개정 주요골자

- 조사기한 연장 : 2002. 9. 16(제23조)
 - ※ 대통령 보고(2002. 10. 16), 대통령 보고후 5개월내 보고서 작성
- 진상규명 불능결정 조항 신설(제24조의2)

3. 위원회 구성·기능

□ 구 성

- 대통령 소속,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 9명 모두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1급상당 별정직), 비상임위원 6
- 위원 9명중 3명은 변호사·판사·검사 출신으로, 1명은 법의학자로 임명토록 규정(헌, 교수 4, 변호사 3, 법의학자 1, 공무원 1)

□ 기 능

- 의문사 관련 주요안건의 심의·의결
-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 의문사로 인정된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
- 증거·자료 제출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

4.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국 5과 11팀

□ 인 력 : 98명(자체정원 23, 파견공무원 34, 전문위원 33, 일용직8)

5. 위원회 활동시한 및 조사개시시점

□ 활동시한

- 사건 조사기한 : 2002. 9. 16
- 위원 임기 : 2002. 10. 16 (임기 2년)
- 대통령 보고 : 2002. 10. 16 한 (조사종료후 1개월내)
- 보고서 발간 : 2002. 3 한 (대통령 보고후 5개월이내)

□ 조사개시시점

- 조사개시 시점은 진정을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 함(법 제21조) : 2000. 12. 2 최초 조사개시

6. 의문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2. 4월 현재)

□ 진정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

- 진정접수(2000.10.20~12.31) : 80건(남 79, 여1)
 - 피진정기관별 : 경찰 26, 군 30, 국정원 10, 기타 14
 - 시기별 : 70년대 15(19%), 80년대 51(63%), 90년대 14(18%)
- 조사개시결정 : 83건
 - 진정사건 : 78건(총80건중 2건 각하)
 - 직권조사 : 5건

□ 조사 추진상황

- 조사종료 사건 : 15건 (인용 2, 기각 12, 취하 1)
- 조사진행 사건 : 68건 (26건은 위원회에 1차 사건보고 완료)

[참고자료]

의문사사건 접수내역(85건)

□ 진정사건(80건)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비고 (담당과)
1	2000. 11. 9.	(양상석)의 자 양순복	불특정	2000. 12. 2.	조사1과
2	2000. 11. 21.	(임용준)의 妹 임수경 兄 임용훈	국방부	2000. 12. 9.	조사3과
3	2000. 11. 23.	(신호수)의父 신정학	경찰청	2000. 12. 9.	조사2과
4	"	(이이동)의妹 이순희	국방부	2000. 12. 9.	조사3과
5	"	(김두황)의兄 김두원	"	2000. 12. 9.	"
6	"	(정경식)의母 김을선	경찰청	2000. 12.16.	조사2과
7	"	(최종길)의知人 이광택	前중앙정보부	2000. 12. 9.	조사1과
8	2000. 11. 28.	(신영수)의兄 신윤수	경찰청	2000. 12. 16.	특조과
9	2000. 12. 12.	(김창수)의子 김용문	불특정	2001. 1. 6.	조사1과
10	"	(이창돈)의父 이기천	국방부	"	조사3과
11	2000. 12. 13.	(우수열)의兄 우학수	불특정	"	조사2과
12	2000. 12. 18.	(이진래)의兄 이정래	캠프헨리 (대구 카튜사)	2001. 1. 13.	조사3과
13	2000. 12. 22.	(장종훈)의父 장동재	중앙경찰서	"	조사2과
14	2000. 12. 27.	(장준하)의妻 김희숙	국가정보원	2001. 1. 20.	조사1과
15	2000.12.28.	(박헌강)의父 박광립	불특정	2001. 1. 20.	조사2과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16	"	(황선철)의父 황규태	경찰	2001. 1. 20. 각하	각하
17	"	(송종호)의兄 송창호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18	"	(박태순)의妹 박희순	"	2001. 1. 20.	특조과
19	"	(이철규)의父 이정진	국가정보원	"	조사1과
20	"	(이내창)의兄 이내이	"	"	"
21	"	(박창수)의母 김정자	"	"	"
22	"	(김준배)의父 김현국	경찰	2001. 1. 13.	조사2과
23	"	(이덕인)의父 이기주	"	"	"
24	"	(우종원)의母 이계남	"	"	"
25	"	(김성수)의父 김종욱	"	"	"
26	"	(문용섭)의知人 박채영	"	2001. 1. 20.	"
27	"	(문승필)의母 오순례	"	"	"
28	"	(정법영)의父 정진동	"	2001. 1. 13.	"
29	"	(김상원)의弟 김상모	"	2001. 1. 20.	"
30	"	(이재호)의妹 이순예	"	"	"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31	2000.12.28.	(고정희)의 母 나화순	경찰	2001. 1. 20.	조사2과
32	"	(허원근)의 父 허영춘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33	"	(문영수)의 知人 허영춘	경찰	2001. 1. 20.	조사2과
34	"	(오범근)의 知人 허영춘	"	"	"
35	"	(배중손)의 知人 허영춘	"	"	"
36	"	(김용갑)의 母 이정인	"	2001. 1. 13.	"
37	"	(박종근)의 父 박채락	국방부	2001. 1. 20.	조사3과
38	"	(우인수)의 母 서부임	"	2001. 1. 13.	"
39	"	(이윤성)의 父 이명률	"	"	"
40	"	(박필호)의 父 박재원	"	2001. 1. 20. 각하	"
41	"	(정연관)의 父 정명화	"	2001. 1. 13.	"
42	"	(남현진)의 妹 남현순	"	2001. 1. 20.	"
43	"	(박상구)의 母 우정학	"	2001. 1. 20. 각하	"
44	"	(노철승)의 妹 노영희 知人 김봉학	"	2001. 1. 20.	"
45	"	(이승삼)의 父 이두형	"	"	"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46	"	(박성은)의 兄 박성현	"	2001. 1. 20. 각하	"
47	2000.12.28.	(임기윤)의 妻 최광명	국방부	2001. 1. 20.	조사3과
48	"	(정인택)의 妹 정영란	정부	"	조사2과
49	"	(한영현)의 兄 한강현	국방부	"	조사3과
50	"	(김영환)의 4寸 兄 김진환	"	"	"
51	"	(정도준)의 父 정정관	불특정	"	"
52	"	(손윤규)의 知人 박종린	정부	"	특조과
53	"	(한희철)의 父 한상훈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54	"	(변형만)의 知人 임방규	정부	2001. 1. 20.	특조과
55	"	(최은순)의 兄 최문순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56	"	(최석기)의 知人 기세문	정부	2001. 1. 20.	특조과
57	"	(박용서)의 知人 기세문	"	"	"
58	"	(김용성)의 子 김경재	"	"	"
59	"	(안치웅)의 父 안영규	불특정	"	"
60	"	(노진수)의 兄 노진호	정부	"	"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61	"	(심오석)의 父 심재면	"	"	"
62	"	(정성희)의 父 정낙헌	국방부	"	조사3과
63	"	(김용권)의 母 박명선	국방부	2001. 1. 13.	"
64	"	(최우혁)의 父 최봉규	"	"	"
65	2000.12.29.	(박인순)의 兄 박능출	불특정	2001. 1. 20.	조사2과
66	"	(심재환)의 知人 오재영	"	"	"
67	"	(김소진)의 妹 김정화	국방부	"	조사3과
68	"	(이재근)의 父 이두섭	불특정	"	"
69	"	(권두영)의 子 권혜진	안기부	"	특조과
70	"	(정은복)의 子 최종윤	"	"	조사1과
71	2000.12.30.	(김제강)의 妻 정진옥	불특정	"	"
72	"	(임태남)의 妻 서순자	"	"	조사2과
73	"	(박태조)의 妹 박정희	"	"	"
74	2001.1.2.	(이수영)의 知人 김제완	국가정보원	"	조사1과
75	"	(이승룡)의 母 이순옥	대한민국	"	조사2과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76	"	(김석조)의 弟 김용섭	국가정보원	"	조사1과
77	"	(정종인)의 兄 정종후	경찰	2001. 1. 20. 각하	각하
78	"	(김진홍)의 母 강선희	국방부 외 1	2001. 1. 20.	특조과
79	"	(박동학)의 知人 이승우	경찰	"	조사2과
80	2001.1.5. (행사부경유)	(최봉대)의 弟 최봉일	"	"	"

□ 직권사건(5건)

연번	의문사한 자	관련기관	조사개시일	담당과
81	박영두	교도소	2001. 7. 13.	특조과
82	탁은주	경찰	2001. 1. 20.	"
83	이재문	교도소	2001. 3. 17.	조사2과
84	장석구	"	"	조사1과
85	전정배	국방부	2001. 4. 7.	특조과

疑問死真相糾明에 관한特別法 및 施行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시행령
<p>第1條 (目的) 이 법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疑問의 죽음을 당한 事件에 대한 真相을 糾明함으로써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疑問死"라 함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한 疑問의 죽음으로서 그 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違法한 公權力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p>	
<p>2. "民主化運動"이라 함은 民主化運動關聯者 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을 말한다.</p>	
<p>第3條 (疑問死真相糾明委員會의 設置) 疑問死 事件에 대한 調査를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疑問死真相糾明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第4條 (業務 등) ①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疑問死 對象者의 선정</p> <p>2. 疑問死한 者에 대한 調査</p> <p>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p> <p>②委員會는 第1項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相關 機關이나 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업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p> <p>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p> <p>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p> <p>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p> <p>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p>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시행령
<p>第5條 (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 과 常任委員 2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p> <p>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1. 判事·檢事·軍法務官 또는 辯護士의 職에 10年 이상 在職한 者</p> <p>2. 公認된 大學에서 副教授 이상의 職에 8年 이상 在職한 者</p> <p>3. 法醫學을 專攻한 者로서 相關업무에 10年 이상 종사한 者</p> <p>4. 3級 이상 公務員의 職에 5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p> <p>③委員중 3人은 第2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 1人은 第3項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p> <p>④委員長은 政務職으로 補하고 常任委員은 1級 상당 別定職 公務員으로 補한다.</p> <p>⑤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p> <p>⑥委員이 事故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거나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委員을 任命하여야 한다.</p>	<p>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12조란에 기재" 제4조(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p>
<p>第6條 (委員會의 議決) 委員會는 在籍委員 과반수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第7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그 職務를 통할한다.</p> <p>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第8條 (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p> <p>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p> <p>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p> <p>3. 政黨의 黨員</p>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4.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p> <p>②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p> <p>第9條 (委員의 職務上 독립과 身分保障) ① 委員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干涉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職務를 수행한다.</p> <p>② 委員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刑의 宣告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p> <p>第10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陳情人 또는 被陳情인과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p>② 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은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 委員의 기피를 申請할 수 있다.</p> <p>③ 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p> <p>第11條 (事務局的 設置) ① 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p>	<p>제5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한다.</p>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② 事務局에 事務局長 1인과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둔다. 이 경우 事務局에 두는 職員의 數는 최소한이어야 한다.</p> <p>③ 事務局長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免하고, 委員會의 所屬職員은 事務局長의 제청으로 委員長이 任免한다.</p> <p>④ 事務局長은 委員長의 지휘를 받아 委員會의 사무를 관장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p>	<p>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6조(하부조직)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p> <p>제7조(행정과) ① 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및 사무국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진정 등 민원의 접수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p>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p>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